
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주요내용 변경대비표

■ 개정시행일 : 2021년 8월 25일

■ 정보교류차단 부문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(「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」 제 73조 2호)

| 변경 전 | 변경 후 | 비 고 |
|--|--|-------|
| 1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① “고유재산운용업무”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은행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제5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. | 1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① “고유재산운용업무”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은행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를 말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. | 오류 수정 |

■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

(「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」 제 73조 4호)

| 변경 전 | 변경 후 | 비 고 |
|---|---|------------------|
| 2. 기업금융업무 등의 정보교류차단 ② 1) 기업금융업무와 다음 각각의 업무 간의 경우 가. 주권비상장법인(「자본시장법」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 법인은 제외한다) <신설>에 출자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-6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권비상장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| 2. 기업금융업무 등의 정보교류차단 ② 1) 기업금융업무와 다음 각각의 업무 간의 경우 가. 주권비상장법인(「자본시장법」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 법인은 제외한다) 또는 코넥스시장에 출자, <삭제>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,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|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|
| 2. 기업금융업무 등의 정보교류차단 ② 1) 기업금융업무와 다음 각각의 업무 간의 경우 나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,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, <신설>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가간에만 거래되는 증권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-6조 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 및 <신설> | 2. 기업금융업무 등의 정보교류차단② ② 1) 기업금융업무와 다음 각각의 업무 간의 경우 나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,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<삭제>에 따른 전문가간에만 거래되는 증권으로서 <삭제>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2-2조 |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|

| 변경 전 | 변경 후 | 비 고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1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(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)에 대한 매매를 중개·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| 제2항 제4호에 따른 채무증권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(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)에 대한 매매를 중개·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| |
| 2. 기업금융업무 등의 정보교류차단 ② 1) 기업금융업무와 다음 각각의 업무 간의 경우 바. 그 밖의 기업금융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-6조 제5항에서 정한 코넥스시장 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)에 상장한 법인에 출자하는 업무. 다만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자신과 지정자문 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| 2. 기업금융업무 등의 정보교류차단② ② 1) 기업금융업무와 다음 각각의 업무 간의 경우 바. 그 밖의 기업금융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<삭제> 코넥스시장(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)에 상장한 법인에 출자하는 업무. 다만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자신과 지정자문 계약을 체결한 코넥스시장 상장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|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사항 반영 |
| 3. 계열회사등과의 사외정보교류 차단 은행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, 그 밖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 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 | 3. 계열회사등과의 사외정보교류 차단 은행은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, 그 밖에 <삭제> 회사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③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<삭제>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.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|
| [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] ② 임원(이사, 감사를 말하며 , 대표이사,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 한다)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| [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] ② 임원(<삭제> 대표이사,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 한다) 또는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| 임원 의미 명확화 |